연구전문원관리세칙

제 정 2014. 9. 1 제1차개정 2016. 1. 1 제2차개정 2016. 9. 1 제3차개정 2021. 3.10 제4차개정 2022.01.01 제5차개정 2022.12.01 제6차개정 2023.12.15 제7차개정 2024.03.15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한국농어촌공사「인사규정」제3조제3항 및 제3조제4항에 따른 연구전문원의 임용, 복무, 보수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연구전문원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따른다.
- 제3조(직명) ① 연구전문원(「연구관리규정」 제2조제5호에 따라 연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의 직명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직제규정」제7조제2항에 따른 일반직 해당 직급에 준한다.(개정 2022.1.1.)
 - 1. 선임연구위원: 1급
 - 2. 연구위원 : 2급
 - 3. 수석연구원 : 3급
 - 4.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4급
 -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책임연구원은 「직제규정」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장 직위에 준하는 처우를 하다.
 - ③ 제2항에 따른 책임연구원 직명의 사용은 선임연구원인 자가 제3조의2에 따른 연구직으로 임용하는 날로 한다.
 - ④ 연구전문원은「직제규정」제7조제1항에 따른 일반직 사원으로 전환할 수 없다.
- 제3조의2(연구전문원의 구분) 연구전문원은 계약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전임연구원: 계약직
 - 2. 연구직 : 무기계약직
- 제4조(직무관리) ① 연구전문원은 연구개발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직군, 직렬, 직명은 별표 6과 같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인사 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내외 파견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인사규정」제17조를 준용한다.
 - ③ 농어촌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전문원을 「직제규정시행세칙」제4조제3항 별표 5에 따른 농어촌연구원 하부조직의 3급 이상 직급의 보직에 임용하거나 사장에게 2급 이상 직급의 보직에 임용을 추천할 수 있다.
- 제5조(인력운영계획 수립) ① 연구원장은 필요시 연구전문원의 인력 수급 및 운영계획(이하 "인력운영계

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본사 정원총괄부서장 및 인사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2장 채 용

- 제6조(채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연구원장은 제5조에 따라 연구전문원의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 채용 분야, 채용예정인원, 자격요건 및 대우, 채용시기, 채용방법 등이 포함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본사 정원 총괄부서장 및 인사총괄부서장과 협의한 후 사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한다.
 - ② 연구원장은 제1항의 본사 인사총괄부서장과 협의시「계약직근로자관리세칙」제8조의2에 따라 채용 승인 요청서를 본사 인사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 제6조의2(연구전문원의 채용) 제6조에 따라 연구전문원을 채용할 때에는 제8조1항의 채용 직명에 상관없이 제 3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임연구원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 제7조(채용방법) ① 전임연구원은「계약직근로자관리세칙」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격을 제한하여 공개 모집하되, 본사 인사총괄부서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2.1.1.)
 - ② 제1항에 따라 전임연구원을 채용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홈페이지, 그 밖에 채용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1.1.)
 - ③ 제1항에 따른 채용시 응시자가 1명 이상이면 경쟁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2.1.1.)
- 제8조(채용자격) ① 전임연구원의 채용을 위해 요구되는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채용 직명은 연구실적 등을 고려하여 제9조의2에 따른 채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22.1.1.)
 - ②「인사규정」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 하는 자는 전임연구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 제9조(채용심사) ① 전임연구원의 채용심사는 연구원장이 주관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전형을 실시한다. 이 경우 제2차 전형은 제1차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1. 제1차 전형 : 서류심사
 - 2. 제2차 전형 : 연구실적 심사 및 면접심사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 분야별로 적합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합격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1.1.)
 - ③ 제1항의 세부심사기준은 제9조의2에 따른 채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22.1.1.)
 - ④ 제7조에 따른 채용시 응시자가 1명인 경우에도 채용심사를 생략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22.1.1.)
- 제9조의2(채용심의위원회) ① 연구원장은 전임연구원을 채용할 경우 채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22.1.1.)
 - ② 채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위원장 : 연구원장
 - 2. 내부위원 : 3급 이상 사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
 - 3. 외부위원 : 연구원 채용담당부서 담당부장이 추천하는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1명 이상 지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세칙에 따른 외부위원이 될 수 없다.
 - 1.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2. 비상임 이사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
 - 3. 직전 채용과정에 외부위원으로 참여한 자(직전 채용이 아니더라도 직종·분야별 연속된 채용의 경우에 도 해당)

- 4. 동일한 채용의 여러 전형 가운데 다른 전형에 외부위원으로 참여한 자
- 5. 기타 채용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④ 채용심의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연구원 채용담당부서의 담당부장이 된다.
- 제10조(전형절차) ① 제1차 전형(서류 심사)은 서면으로 심사하며, 심사위원 구성 시 심사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2.1.1.)
 - 1. 농어촌연구원 이외 부서의 3급 이상의 직원
 -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
 - ② 제2차 전형(연구실적 심사 및 면접심사)은 구두발표 및 면접을 통하여 평가하며, 심사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을 과반수 포함하여야 한다.
 - 1. 농어촌연구원 이외 부서의 3급 이상의 직원
 - 2. 채용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
 -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에서 제척해야 하며, 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심사에 참여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를 회피해야 한다.
 - 1.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전형 대상자인 경우
 - 2. 위원이 전형 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전형 대상자와 근무경험 관계에 있었던 경우
 - ④ 삭제
 - ⑤ 그 밖의 증빙자료 등의 제출, 합격자 결정,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채용비리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하여는 「채용관리세칙」을 준용한다.
- 제11조(임용 등) ① 전임연구원 전형절차의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기 전에「채용관리세칙」제20조에 따라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절차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채용점검위원회는 민간전문 가 또는 다른 공공기관의 인사담당자 등 외부위원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 ② 전임연구원은 제1항에 따른 채용점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장이 임용한다.(개정 2022.1.1.)
 - ③ 연구원장은 전임연구원을 신규로 채용하기 전에 신원조회를 마쳐야 한다.(개정 2016.9.1.)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용 전에 신원조회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각서를 받고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원조회는 채용 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전임연구원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1. 입사지원서(개정 2016.9.1.)
 -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
 - 3.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 4. 기본증명서
 - 5. 주민등록등본
 - 6. 병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 7. 신원진술서
 - 8. 채용신체검사서(병원 또는 의원 발행)

- 9. 학위논문 및 연구실적
- 10.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⑥ 전임연구원의 최초 임용기간은 수습기간을 포함한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제12조(수습임용) ① 전임연구원을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인사규정」제8조를 준용하여 3개월의 수습기 간을 둔다.(개정 2022.1.1.)
- ② 제1항에 따라 수습기간 중인 전임연구원이「인사규정」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업무수행능력
- 이 부족하거나 업무수행태도가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2.11)
- ③ 수습기간 중인 전임연구원이「인사규정」제4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 직원을 제출할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해당 휴직기간은 수습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수습기간 종료시 전임연구원으로 임용한다.
- ⑤ 수습기간 중인 전임연구원은 제26조에 따른 신분보장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 제13조(재임용) ① 연구원장은 제11조제5항에 따른 임용계약 기간이 만료된 전임연구원을 재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계약 기간 만료일 45일 전까지「인사규정」제29조제3항제4호에 따라 부서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무성적평정, 공사 및 농어촌연구원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별지 제7호서 식에 따른 재임용 심사대상자 명부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연구업적기술서를 확정하여 제14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연구전문원인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 ② 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전문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심의결과를 인사총괄부서장 및 임용기간 만료 예정자에게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전임연구원을 재임용하며, 계약기간은 재임용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④ 제2항의 통보로 제6조제2항의 채용 사전심의를 갈음한다.
- ⑤ 최초 또는 재임용계약 기간 동안 근무성적평정 결과 "60점 미만"을 받은 전임연구원은 재임용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한다.(개정 2022.1.1.)
- ⑥ 전임연구원이 제3항에 따라 재임용될 경우에는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본다.
- 제14조(무기계약직 전환) ① 연구원장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재임용된 전임연구원을 재임용 기간 만료 이후 무기계약근로자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계약 기간 만료일 45일 전까지 '무기계약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를 확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 명부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연구업적기술서를 작성하여 제14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연구전문원인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무기계약직 전환심의위원회'는 4~8인 범위의 내·외부 인사로 구성하되, 1/2 이상은 외부인 사를 포함한다. 외부위원은 인사노무 및 노사관계 전문가, 노동위원회 조정위원, 연구분야 관련 전문가, 변호사, 노동계 추천인사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신설 2022.1.1.)
- ③ 제1항에 따라 연구원장은 연구전문원인사위원회 심의결과를 인사총괄부서장 및 임용기간 만료 예정 자에게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전임연구원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임용하며,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⑤ 전임연구원이 제4항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로 임용될 경우에는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본다.
- 제14조의2(연구전문원인사위원회) ① 연구전문원 인사관리의 공정과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농어촌연구원 에 연구전문원인사위원회를 둔다.

- ② 연구전문원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 1. 제3항제1호, 제3호의 경우

가. 위원장 : 연구원장

나. 위원: 1급 및 2급 사원 중에서 연구원장이 필요시마다 지명하는 6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1/2 이상은 연구원 이외 부서의 직원으로 한다. 다만, 무기계약직 전환의 경우 외부인사를 2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외부인사를 제외한 위원의 1/2 이상은 연구원 이외 부서의 직원으로 한다.

다. 간사 : 농어촌연구원 인사담당부장

2. 제3항제2호의 경우

가. 위원장 : 연구원장

나. 위원 : 1급부터 3급까지 사원 중 연구원장이 지명하는 14명 이내로 구성하되, 1/2 이상은 연구원이외 부서의 직원으로 한다.

다. 간사 : 농어촌연구원 인사담당부장

- ③ 연구전문원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1. 연구전문원의 재임용, 무기계약직 전화
 - 2. 연구직의 상위직명부여
 - 3. 그 밖에 연구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장 보수 및 복지후생

제15조(보수) 연구전문원의 보수는 「연봉제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1.1.)

- 제15조의2(초임 기본연봉) ① 전임연구원의 초임 기본연봉은 「연봉제규정」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임 기본연봉 적용시 고려되는 경력 및 환산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2.1.1.)
 - 1. 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군복무 경력: 100%
 - 2. 그 밖의 연구경력: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해당 직명의 채용자격기준을 초과하는 연구경력에 한정하며, 채용자격에 해당하는 학위취득을 위한 기간은 제외된다.
- ② 제12조에 따른 수습기간 중의 전임연구원은 임용 예정 직명 초임기준급의 80%를 지급한다.
- 제16조(복지후생) 전임연구원의 복지후생은「계약직근로자관리세칙」제34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연구직의 복지후생은「복지후생규정」에 따른다.

제4장 상위직명의 부여

- 제17조(상위직명부여의 원칙) ① 연구직의 상위직명부여는 상위직명부여에 필요한 최저근속년수에 도달한 바로 아래 직명의 연구직 중에서 근무성적평정, 공사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 ② 연구직의 상위직명부여는 연구전문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임용한다.
 - ③ 상위직명부여는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1회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 제18조(상위직명부여에 걸리는 최저 근속기간) 연구직의 각 상위직명부여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은 「인사 규정」제22조를 준용한다. 다만, 최저근속기간에는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제19조(서열명부) ① 연구원장은 제18조에 따른 상위직명부여에 걸리는 최저근속기간에 도달한 연구직을 대상으로 직명별로 별지 4호서식에 따른 상위직명부여후보자 서열명부를 작성하여 연구전문원인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 ② 상위직명부여 후보자 서열명부는 상위직명부여 심사일이 속한 월의 전전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서열명부 작성에서 제외하다.

- 1. 제22조에 따른 상위직명부여제한자
- 2. 최근 2년 이내에 근무성적평정 결과 "60점 미만"을 받은 자(개정 2022.1.1.)
- 제20조(상위직명임용절차) ① 연구직의 상위직명 부여는 상위직명부여에 걸리는 최저근속기간에 도달한 연구직을 대상으로 근무성적평정에 근거하여 작성된 상위직명부여자 서열명부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따른 상위직명부여는 하위직명의 연구직 중에서 임용하여야 하며 임용하고자 하는 인원수에 대하여 후보자 서열명부의 고득점 순위로 3배수의 범위에서 대상자를 연구전문원인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 ③ 연구전문원인사위원회에서는 서열명부상의 평정점수의 95퍼센트와 연구전문원인사위원회 평정점수의 5퍼센트를 합산한 고득점 순위로 상위직명임용대상자의 2배수를 사장에게 추천하여, 사장이 상위직명임용대상자를 최종 선발한다.
 - ④ 상위직명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인원수는 제5조에 따른 인력운영계획을 고려하여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 <삭제>

제22조(상위직명부여제한) 연구직의 상위직명부여의 제한에 관하여는「인사규정」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근무성적평정

- 제23조(평정종류) 연구전문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 1. 정기평정 : 연구전문원은 12월 15일을 기준으로 전(前) 1년을 정기평정 기간으로 설정하여 연 1회 실시 하다.
 - 2. 수시평정 : 특별히 필요한 경우 시기 및 기간을 따로 정하여 실시한다.
- 제24조(전임연구원의 평정방법) ① 전임연구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역량평정과 업적평정으로 구분하고, 평정 요소별 평정점은 별표 4와 같다.
 - ② 전임연구원의 역량평정은 전임연구원의 능력, 노력, 청렴도 등을 평가하며, 업적평정은 연구과제 평가결과, 논문게재 및 실용화 실적, 공사기여도 등을 평가한다.
 - ③ 전임연구원의 역량평정은 상사평가로 실시하되, 제1차 평정 및 2차 평정으로 구분하며, 평정권자는 「인사규정시행세칙」제53조를 준용한다.(개정 2022.1.1.)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정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⑤ 전임연구원의 역량평정 및 업적평정 등 근무평정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 ⑥ 전임연구원의 역량평정 대상인원에 대한 등급별 비율은 별표 5와 같다.
- 제24조의2(연구직의 평정방법) ① 연구직의 근무성적평정은 역량평정으로 하고, 평정 요소별 평정점은 별표 4와 같다.
 - ② 연구직의 역량평정은 연구직의 능력, 노력, 청렴도 등을 평가한다.
 - ③ 연구직의 역량평정은 상사평가로 실시하되, 제1차 평정 및 2차 평정으로 구분하며, 평정권자는 「인사 규정시행세칙」제53조를 준용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정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⑤ 연구직의 역량평정 대상인원에 대한 등급별 비율은 별표 5와 같다.
 - ⑥ 연구직의 근무평정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 제25조(전임연구원 평정결과의 활용) ① 연구원장은 전임연구원에 대해 제24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결과

- 의 총합계 고득점 순서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의 총괄점수표를 작성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순위표 작성 시 동점자의 순위결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개정 2016.1.1.)
- 1. 역량평정 점수가 우수한 사람
- 2. 업적평정 점수가 우수한 사람
- ③ 제1항의 총괄점수에 대한 순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인사관리 및 금전적·비금전적 보상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 제25조의2(연구직 평정결과의 활용) ① 연구원장은 연구직에 대해 제24조2에 따른 근무성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상위직명부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장 복 무

- 제26조(신분보장) 연구전문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세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직위해제 또는 면직 등의 신분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6.1.1.)
- 제26조의2(근로계약의 해지등) 최초 또는 재임용계약 기간에 있는 전임연구원의 근로계약의 해지와 의원면 직은 「계약직근로자관리세칙」제17조와 제18조를 준용한다.(신설 2022.1.1.)
- 제27조(당연면직) 제14조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로 임용된 연구직의 당연면직은 「인사규정」제35조를 준용한다.(개정 2022.1.1.)
- 제28조(직권면직) ① 사장은 제14조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로 임용된 연구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2022.1.1.)
 - 1.「인사규정」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될 때
 - 2. 농어촌연구원의 기능 개편, 연구분야 조정 등으로 채용계약상 연구분야가 지속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 될 때
 - 3.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2회 연속 "60점 미만"을 받는 등 직무수행역량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업무실적이 극히 부진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22.1.1.)
 - ② 제1항에 따라 직권면직을 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③ 그 밖에 직권면직의 방법・절차 등은「인사규정」제3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16.1.1.)
- 제29조(직권면직 사유의 통보) 연구원장은 제14조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로 임용된 연구직에게 제28조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본사 인사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1.1.)
- 제30조(직권면직의 예고) 사장은 제28조에 따른 직권면직을 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이를 예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1.1., 2021.1.1.)
- 제31조(의원면직) 제14조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로 임용된 연구직의 의원면직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 제36조의2를 준용한다.(개정 2022.1.1.)
- 제32조(정년) ① 제14조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로 임용된 전문연구원의 정년은 「인사규정」제37조에 따른 일반직 직원의 정년에 준한다.(개정 2022.1.1.)
 - ② 제11조제5항, 제13조제4항에 따라 최초, 재임용된 전임연구원이 임용계약기간 중 제1항에 따른 정년에 해당하는 연령에 달했을 경우의 임용계약은 그 연령에 달했을 때까지로 한다.(개정 2022.1.1.)

- 제32조의2(명예퇴직) 최초임용 이후 20년 이상 근속한 연구직의 명예퇴직은「인사규정」제39조를 준용한다.(신설 2022.1.1.)
- 제32조의3(희망퇴직) 제14조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로 임용된 연구직의 희망퇴직은 「인사규정」 제40조를 준용한다.(신설 2022.1.1.)
- 제32조의4(임금피크제) 연구직의 임금피크제에 관하여는 「임금피크제운영지침」에서 "7급사원"에 적용하는 사항을 준용한다.
- 제33조(휴일 및 휴가) 연구전문원의 휴일 및 휴가는 「취업규칙」을 준용한다.
- 제34조(휴직등) 연구전문원의 휴직에 관하여는 「인사규정」 제4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4항을 준용한다.(개정 2022.1.1.)
 - ② 연구전문원의 휴직의 기간 및 휴직의 효력에 관하여는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다만, 최초 또는 재임용된 전임연구원의 휴직기간은 계약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또는 재임용된 전임연구원의 육아휴직에 대하여는 「계약직근로자 관리세칙」제28조를 준용한다.
- 제35조(직위해제) 연구전문원의 직위해제는「인사규정」제44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1.1.)
- 제36조(상벌) 연구전문원에 대한 표창 및 징계는「인사규정」제46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연구지원

- 제37조(공동연구, 교육) ① 연구전문원의 연구의욕 및 연구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등 과의 공동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거나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대상자 선정 및 시행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 제38조(출장) 연구전문원이 공사 업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여비규정」 제17조제1항 따라 일반직 직원의 해당 직급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8장 보 칙

- 제39조(직무발명 양도 및 직무업적 사용금지) 연구전문원의 직무발명은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사에 양도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상의 업적을 개인 명의로 발표 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40조(연구업적 관리) 연구원장은 연구전문원의 연구업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과제 수행 이력, 기술지원 등 실적, 논문발표 실적, 발명특허실적, 전문교육 이수실적 등 세부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계속적으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1.1.)
- 제41조(다른 규정의 준용 등) 이 세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 제42조(규정의 개정·폐지) 연구원장은 이 세칙을 개정·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규관리규정」제7조의3에 따른 사규 사전예고전에 본사 인사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 제16조 및 제17조제2항의 전문계약연구원 보직 임용, 학자금 및 주택자금의 대여, 승진인사위원회의 심의는「인사규정」및「복지후생규정」의 관련 규정

개정 후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적용례) 이 세칙 시행당시를 기준으로 기존 근무 중인 전문연구원 중 최초 임용기간에 있는 전문연구원이 제11조제6항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 제13조에 따른 재임용 심사를 통하여 재임용하고, 재임용기간에 있는 전문연구원이 제13조제3항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 제14조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를 통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임용한다. 이 경우 각 심사는 이 세칙 시행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직위 변경에 따른 적용례) 기존 근무 중인 전문연구원 중 제3조제2항의 과장 직위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본 세칙 시행 후 즉시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과장 직위에 준하는 처우를 한다.

제4조(경력산정에 관한 특례) 이 세칙 시행 이전 채용되어 이 세칙 시행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정하여 최초 채용시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정한 경력에 최초 채용시부터 무기계약직 전환시까지 공사에서 근무한 경력을 100% 비율로 환산한 경력을 합산하여 경력을 재산정한다.

제5조(등급별 인원배분율 적용례) 별표 5의 개정사항은 이 세칙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평정부터 적용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직의 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 연구직의 평정에 관한 개정사항은 이 세칙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평정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전문원 평정에 관한 적용례) 2023년 연구전문원의 정기평정은 2023년 12월 15일로 정기평정 기준일을 일원화하여 실시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_연구전문원 채용자격 기준]<제8조제1항 관련> (개정 2016.9.1., 2022.1.1.)

연구전문원 채용자격 기준

직 명	자 격 기 준
선임연구위원	 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15년 이상 연구경력 소지자 관련분야 대학교 정교수 이상 경력 소지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연구위원	 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12년 이상 연구경력 소지자 관련분야 대학교 부교수 이상 경력 소지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수석연구원	 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8년 이상 연구경력 소지자 관련분야 대학교 조교수 이상 경력 소지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선임연구원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관련분야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경력 소지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별표 2_초임 기본연봉 산정시 경력가산 기준]<제15조의2 관련>(개정 2022.1.1.)

초임 기본연봉 산정시 경력가산 기준

경 력 분 야	환산율
국책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 공기관 산하연구소 및 대학연구소에서 상근으로 재직한 기간	100%
대학교수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100%
전임강사 미만의 직위에서 재직(강의)한 기간	50%
관련분야 사기업 연구기관에서 상근으로 재직한 기간	60%

[※] 중복경력 하나만 인정(국외경력 동일 적용). 경력증명 등에서 연구업무 수행 이 증명될 경우에만 인정

[별표 3]<제15조제2항 관련> <삭제>

[별표 4_근무성적평정 요소별 평정점]<제24조제1항 관련>

근무성적평정 요소별 평정점

평 정 요 소	배	점
4 4 7 7 7	전임연구원	연구직
역 량 평 정	30점	100점
업 적 평 정	70점	_
계	100점	100점

※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함

[별표 5_등급별 인원배분율]<제25조제3항 관련>(개정 2022.1.1.)

등급별 인원배분율

		등급별 비			
인원	S	A	В	C이하	비고
	30	30%	30%	10%	
1					최고 98점
2	1	1			
3	1	1	1		
4	1	1	1	1	
5	2	1	1	1	
6	2	2	1	1	
7	2	2	2	1	
8	3	2	2	1	
9	3	3	2	1	
10	3	3	3	1	
11	4	3	3	1	
12	4	4	3	1	
13	4	4	4	1	
14	4	4	4	2	
15	5	4	4	2	
16	5	5	4	2	
17	5	5	5	2	
18	6	5	5	2	
19	6	6	5	2	
20	6	6	6	2	

[※] 보직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은 각각의 평정자가 <u>직명별로</u> 구분하여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해야 한다. 다만, 피평정자가 4명 미만인 경우에는 각 등급에 1명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6_연구전문원의 직군 직렬 직명 표]<제4조제1항 관련>

연구전문원의 직군 직렬 직명 표

직군	직렬	<u>직명</u>
연구개발	지역사회연구	
	자연환경연구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스성연구의
	생산자원연구	수석연구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간척개발연구	

[별지 제1호서식_전임연구원 채용계약서]<제11조제5항 관련> (개정 2016.9.1., 2022.1.1., 2024.3.15.)

(표준) 근로계약서

사업주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함)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근로계약, 연구전문원관리세칙, 단체협약 등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 을 체결한다.

1. 당사자

	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주	대 표 자	연 락 처
	사업장소재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자	연 락 처	
	주 소	

2. 직무: 연구개발 업무

3. 채용직명 :

4. 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 단, 수습기간은 년 월 일부터 3개월로 하며, 수습기간 종료 전 근 로자에게 통보해야 함
- 5. 근무장소 : 농어촌연구원
- 6. 근무조건
- 가.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근로일 및 근로시간 : 월 ~ 금, 주 시간, 1일 시간 ※ 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업무시작시각	업무종료시각	휴게시간
:	:	: ~ :

- 단, 직무의 성질,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일 및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공사는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1주일에 12시간 내에서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나. 연봉: 기본연봉, 연봉외수당, 성과연봉으로 구성한다.

- 기본연봉
 - 기본연봉은 초임기준급, 직무급(보직자에 한함), 역할급(비보직자인 연구위원 및 선임연구위원은 수석연구원의 역할급 적용), 표준가산급을 합산하여 산 정한다.
 - 초임기준급은 원이며, 초임기준급에 「연봉제규정」제9조에 따른 직무급(보직자에 한함), 역할급(비보직자인 연구위원 및 선임연구위원 은 수석연구워의 역할급 적용)을 합산한다.
 - 「연구전문원관리세칙」제15조의2에 따른 경력이 있을 경우 환산율에 따라 경력기간을 산정, 경력 1년마다 표준가산급을 환산하여 초임기준급에 가산하되, 1년미만 단수는 절사하고 경력적용의 상한은 「연봉제규정」에 따른다.
 - 수습기간 중에는 초임기준급의 80%를 지급하고, 직무급(보직자에 한함), 역 할급(비보직자인 연구위원 및 선임연구위원은 수석연구원의 역할급 적용)과 표준가산급은 지급하지 않는다.
 - 개인성과평가 등에 따라 기본연봉을 재산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 은 「연봉제규정」및 「연봉제규정시행세칙」에 따른다.
- 연봉외수당
 - 연봉외수당은 「연봉제규정」 제13조에 따라 지급한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취업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 성과연봉 :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및 내부경영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며, 지급률 등은 「내부경영성과평가편람」에 따른다.
- 임금지급일 및 지급방법 : 매월 21일에 근로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 근무일에 지급한다.)

다. 휴일, 휴가

- 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공휴일로 지정한 날, 근로자의 날 등 「취업규칙」 제17조에 따르며, 유급으로 한다.
 - 1주 개근에 따른 1일의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한다.

- 휴가 : 연차휴가, 특별휴가, 병가 및 공가로 구분한다.
 - 연차휴가(유급)는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그 밖의 특별휴가, 병가, 공가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계약해지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은 「연구전문원관리세칙」 제26조의2에 따른다.

8. 퇴직에 관한 사항

- 근로자가 계약기간 중에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용자 에게 통보한다.
- 사용자가 계약기간 중에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미리 통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 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한다.

10. 기 타

○ 기타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공사 「연구전문원관리세 칙」, 「취업규칙」 및 「연봉제규정」 등 관계 법령 및 공사 규정에 따른다.

첨부 : 공사 「연구전문원관리세칙」 등 관련 규정 각 1부(취업규칙, 인사규정 및 동 시행세칙, 연봉제규정 및 동시행세칙)

20 년 월 일

(사용자) 한국농어촌공사 (인)

(근로자) ○ ○ ○ (인)

[별지 제1호의2서식_연구직(무기계약근로자) 채용계약서]<제14조제5항 관련> (신설 2022.1.1., 2024.3.15.)

(표준) 근로계약서

사업주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함)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근로계약, 연구전문원관리세칙, 단체협약 등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 을 체결한다.

1. 당사자

	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주	대 표 자	연 락 처
	사업장소재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자	연 락 처	
·	주 소	

2. 직무 : 연구개발 업무

3. 근로개시일 : 년 월 일부터

4. 근무장소 : 농어촌연구원

5. 근무조건

가. 소정근로시가 및 휴게시가

- 근로일 및 근로시간 : 월 ~ 금, 주 시간, 1일 시간 ※ 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업무시작시각	업무종료시각	휴게시간
:	:	: ~ :

- 단, 직무의 성질,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일 및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공사는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1주일에 12시간 내에서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 나. 연봉: 기본연봉, 연봉외수당, 성과연봉으로 구성한다.
 - 기본연봉
 - 기본연봉은 초임기준급, 직무급(보직자에 한함), 역할급(비보직자인 연구위원 및 선임연구위원은 수석연구원의 역할급 적용), 표준가산급을 합산하여 산 정한다.
 - 초임기준급은 원이며, 초임기준급에 「연봉제규정」제9조에 따른 직무급(보직자에 한함), 역할급(비보직자인 연구위원 및 선임연구위원 은 수석연구원의 역할급 적용)을 합산한다.
 - 상위직명부여 및 개인성과평가 등에 따라 기본연봉을 재산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봉제규정」및 「연봉제규정시행세칙」에 따른다.
 - 연봉외수당
 - 연봉외수당은 「연봉제규정」 제13조에 따라 지급한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취업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 성과연봉 :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및 내부경영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며, 지급률 등은 「내부경영성과평가편람」에 따른다.
 - 임금지급일 및 지급방법 : 매월 21일에 근로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 근무일에 지급한다.)

다. 휴일, 휴가

- 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공휴일로 지정한 날, 근로자의 날 등 「취업규칙」 제17조에 따르며, 유급으로 한다.
 - 1주 개근에 따른 1일의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한다.
- 휴가 : 연차휴가, 특별휴가, 병가 및 공가로 구분한다.
 - 연차휴가(유급)는 「근로기준법」및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그 밖의 특별휴가, 병가, 공가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근로계약서 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 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한다.

7. 기 타

○ 기타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공사 「연구전문원관리세 칙」, 「취업규칙」 및 「연봉제규정」 등 관계 법령 및 공사 규정에 따른다.

첨부: 공사「연구전문원관리세칙」등 관련 규정 각 1부(취업규칙, 인사규정 및 동시행세칙, 연봉제규정 및 동시행세칙)

20 년 월 일

(사용자) 한국농어촌공사 (인)

(근로자) ○ ○ ○ (인)

[별지 제2호서식 서약서]<제11조제4항 관련>(개정 2022.1.1.)

서 약 서

본인은 귀사의 근로자로 근무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의 위반 시는 공사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1. 공사의 「연구전문원관리세칙」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명령과 지시에 따라 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 2. 직무발명은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사에 양도하고, 직무수행상의 업적을 개인 명의로 발표 또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3. 공사의 기밀사항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재직 시는 물론 퇴직 후에도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 4.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하고, 공사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정치활동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 5. 품행을 단정히 하여 공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직위를 이용한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퇴직금에서 해당 손해액을 충당하는 등 변상하겠습니다.

20

〈서약자〉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_각서]<제11조제3항 관련>(개정 2022.1.1.)

	각			서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인-	은 금번 신유	원조회를 필히	·지 않고 귀 사에	임용됨에 있어 임용 후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	ᅧ 사유 발생	시에는 당연 '	면직됨을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저	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_상위직명부여후보자서열명부]<제19조제1항 관련>

상위직명부여후보자서열명부

작성기준일 : 년 월 일

			현직명	상위직명부여전형점수
직명	성명	입사일	상위직명	(최근 3년간 근무성적평정
			부여일	평균점/만점)

^{*} 작성대상자 : 제18조에 따른 상위직명부여에 필요한 최저 근속기간에 도달한 연구직을 대상으로 작성하되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연구직은 제외

[별지 제5호서식_근무성적평정 총괄점수표]<제25조제1항 관련>

근무성적평정 총괄점수표

작성기준일 : 년 월 일

부서	<u>직명</u>	성명	총점 (A+B)	역량평정 (A)	업적평정 (B)	순위

[별지 제6호서식_연구업적기술서]<제13조제1항, 제40조 관련>(개정 2022.1.1.)

연구업적기술서

1. 기본사항												
		진	성	(한글)				성별		생년월일		
	사		명	(한자)								
			주	소								
			채용구분		입사역			-일 <u>상</u>		<u>상</u>	<u>현직명</u> }위직명부여일	
	기간		학		교명 전공		-	학위		학위논문제목		
학												
력												
입	기간			근무처		<u> </u>	<u> 직명</u>		업 무 내 용			
사 전												
경												
력												
2. 연구과제 수행이력												
연구과제명							수행기간			참여구	분	

3. 기술지원 / 자문 / 홍보 / 수상 / 기타										
활 동 내 용	수	<u></u> 후요기관 활동			-		비고			
4. 논문·저서·학술발표										
논문저서명	게	재 지 명	게 재 일 자							
(주제명)	()	발표기관)		(발표역	일자)	(1저)	(1저자/교신저자)			
		5. 발 명	특 a	<u>. </u>						
발 명 특 허 명	<u> </u>	등 록 일					허 비고			
= 0 1 -1 0	,	0 -1 4		0.0	= 0 1	1	<u>'</u>			
C 2 ロコ O A) A										
6. 전문교육이수 기 간 교육기관명 교육과정 성 적 비 고										
기 간 교육	11せは	교육과정			성	적	ㅂ]	고		

[별지 제7호서식_재임용 심사(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 명부]<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관련> (신설 2022.1.1.)

전임연구원 재임용 심사(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 명부

작성기준일 : 년 월 일

2-J 17-J	생년월일	계약기간	여그병사	근무성적평정 결과			
성명			연구분야	1차년	2차년	평균	